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0 선고 2019가단51787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최단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

담당변호사 민오기

변론 종결 2021. 3. 16.

판결 선고 2021. 4. 20.

## 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7. 11. 27.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제2614호 공정증서에 기재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4,620,9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

- 1) 주식회사 E은 2005. 6. 27. F 주식회사에 16억 8,000만 원을 대출하였고,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.
- 2) 주식회사 E은 2007. 5. 25.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85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. 6. 23. 'C, F 주식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310,089,440원과 그중840,000,000원에 대하여 2007. 5. 26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와 C 간의 채무변제계약 등

- 1) C은 2017. 11. 27.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 G의 처인 피고에게 '차용금 6,300만원(이자 월 70만 원)을 2018. 2. 27.까지 변제하겠다.'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, 같은 날 위 6,300만 원에 대하여 '수취인 피고, 액면금 6,300만 원, 발행일 2017. 11. 27., 지급기일 2018. 2. 27., 위 금액을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인에게 약속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(이하 '이 사건 채무변제계약'이라 한다).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.'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제261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 작성해 주었다.
- 2)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978호로 C의 주식회사 H에 대한

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. 5. 29. 인용결정을 받았다.

3)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합계 14,620,967원을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동래구청장,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된 2017. 11. 27.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.

### 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2017. 11. 27. 피고에게 이 사건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기를 3개월 후인 2018. 2. 27.까지로 정한 후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점, 피고는 변제기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18. 5. 29.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, C의 위 급여채권은 사실상 C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급여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·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그 실질에 있어 자신의 급여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해 준것과 다를 바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### 2)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C의 처인 I 명의의 통장으로 2017. 11. 9. 5,801,000원, 2017. 11. 17. 5,201,000원,

2017. 11. 23. 25,000,000원, 2017. 11. 27. 27,005,000원, 합계 63,007,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돈을 빌려 주었는바,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1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피고는 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 직전에 C의 아들인 K으로부터 2017. 11. 10. 2,000만 원, 같은 달 27. 2,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는바, 이를 이용하여 1 에게 위 주장과 같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## 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

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와 함께 변제받은 돈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.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합계 14,620,967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,620,9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.

판사 조규설